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목적 등)

-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제)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비급여 대상 항목과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1와 같다.

■ (이용료 납부)

-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3. 매월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때
-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 계산

2026 01. 01 적용

1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69,730	15%	10,459.5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9%	6,275.7	25일	70,000	57,500	25,000	261,488	152,500	413,988	156,893	152,500	309,393	104,595	152,500	257,095
			22일	61,600	50,600	22,000	230,109	134,200	364,309	138,065	134,200	272,265	92,044	134,200	226,244
	6%	4,183.8	21일	58,800	48,300	21,000	219,650	128,100	347,750	131,790	128,100	259,890	87,860	128,100	215,960
			20일	56,000	46,000	20,000	209,190	122,000	331,190	125,514	122,000	247,514	83,676	122,000	205,676
2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64,590	15%	9,688.5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9%	5,813.1	25일	70,000	57,500	25,000	242,213	152,500	394,713	145,328	152,500	297,828	96,885	152,500	249,385
			22일	61,600	50,600	22,000	213,147	134,200	347,347	127,888	134,200	262,088	85,259	134,200	219,459
	6%	3,875.4	21일	58,800	48,300	21,000	203,459	128,100	331,559	122,075	128,100	250,175	81,383	128,100	209,483
			20일	56,000	46,000	20,000	193,770	122,000	315,770	116,262	122,000	238,262	77,508	122,000	199,508
3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59,640	15%	8,946.0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9%	5,367.6	25일	70,000	57,500	25,000	223,650	152,500	376,150	134,190	152,500	286,690	89,460	152,500	241,960
			22일	61,600	50,600	22,000	196,812	134,200	331,012	118,087	134,200	252,287	78,725	134,200	212,925
	6%	3,578.4	21일	58,800	48,300	21,000	187,866	128,100	315,966	112,720	128,100	240,820	75,146	128,100	203,246
			20일	56,000	46,000	20,000	178,920	122,000	300,920	107,352	122,000	229,352	71,568	122,000	193,568
4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58,010	15%	8,701.5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9%	5,220.9	25일	70,000	57,500	25,000	217,538	152,500	370,038	130,523	152,500	283,023	87,015	152,500	239,515
			22일	61,600	50,600	22,000	191,433	134,200	325,633	114,860	134,200	249,060	76,573	134,200	210,773
	6%	3,480.6	21일	58,800	48,300	21,000	182,732	128,100	310,832	109,639	128,100	237,739	73,093	128,100	201,193
			20일	56,000	46,000	20,000	174,030	122,000	296,030	104,418	122,000	226,418	69,612	122,000	191,612
5등급 / 인지지원등급															
1일 수가			비급여				합계								
56,360	15%	8,454.0	일수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급여비용	식대	합
	9%	5,072.4	25일	70,000	57,500	25,000	211,350	152,500	363,850	126,810	152,500	279,310	84,540	152,500	237,040
			22일	61,600	50,600	22,000	185,988	134,200	320,188	111,593	134,200	245,793	74,395	134,200	208,595
	6%	3,381.6	21일	58,800	48,300	21,000	177,534	128,100	305,634	106,520	128,100	234,620	71,014	128,100	199,114
			20일	56,000	46,000	20,000	169,080	122,000	291,080	101,448	122,000	223,448	67,632	122,000	189,632